

2024년 장기요양고시 변경 안내

2023. 11. 24.

편집 : 기업부설연구소 진영종 소장

● '24년도 장기요양 수급자 수

- 110만명에 가까운 수급자가 재가 및 시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연도	2020	2021	2022	2023.8	2024	비고
수급자수(만)	85.8	95.4	101.9	107.6	110	

● '24년도 급여비용(수가) 인상

- 전년도 대비 평균 2.92% 인상

< 급여유형별 급여비용 인상률 >

요양시설	공생	주·야간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3.04	3.24	3.05	11.46	2.72	3.06	3.34

● '24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조정

- 등급별로 1만 9,100원 ~ 18만 4,900원까지 인상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월 한도액(원)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 '24년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 수가

- 방문요양 (단위 : 원)

방문당 시간	'23년 수가	'23년 본인부담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
30분	16,190	2,429	16,630	2,495
60분	23,480	3,522	24,120	3,618
90분	31,650	4,748	32,510	4,877
120분	40,280	6,042	41,380	6,207
150분	46,970	7,046	48,250	7,238
180분	52,880	7,932	54,320	8,148
210분	58,930	8,840	60,530	9,080
240분	65,000	9,750	66,770	10,016

- 방문목욕

(단위 : 원)

구분	'23년 수가	'23년 본인부담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
차량이용(차량 내)	82,160	12,324	84,670	12,701
차량이용(가정 내)	74,070	11,111	76,340	11,451
차량 미 이용	46,250	6,938	47,670	7,151

- 주야간보호

(단위 : 원)

등급		'23년 수가	'23년 본인부담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1등급	38,630	5,795	39,810	5,972
	2등급	35,760	5,364	36,850	5,528
	3등급	33,010	4,952	34,020	5,103
	4등급	31,510	4,727	32,470	4,871
	5등급	30,000	4,500	30,920	4,638
	인지지원등급	30,000	4,500	30,920	4,638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1등급	51,780	7,767	53,360	8,004
	2등급	47,960	7,194	49,420	7,413
	3등급	44,270	6,641	45,620	6,843
	4등급	42,770	6,416	44,070	6,611
	5등급	41,240	6,186	42,500	6,375
	인지지원등급	41,240	6,186	42,500	6,375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1등급	64,400	9,660	66,360	9,954
	2등급	59,660	8,949	61,480	9,222
	3등급	55,080	8,262	56,760	8,514
	4등급	53,580	8,037	55,210	8,282
	5등급	52,050	7,808	53,640	8,046
	인지지원등급	52,050	7,808	53,640	8,046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1등급	70,950	10,643	73,110	10,967
	2등급	65,720	9,858	67,720	10,158
	3등급	60,720	9,108	62,570	9,386
	4등급	59,190	8,879	61,000	9,150
	5등급	57,690	8,654	59,450	8,918
	인지지원등급	52,050	7,808	53,640	8,046
13시간 초과	1등급	76,080	11,412	78,400	11,760
	2등급	70,480	10,572	72,630	10,895
	3등급	65,110	9,767	67,100	10,065
	4등급	63,600	9,540	65,540	9,831
	5등급	62,100	9,315	63,990	9,599
	인지지원등급	52,050	7,808	53,640	8,046

- 방문간호

(단위 : 원)

방문당 시간	'23년 수가	'23년 본인부담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
15분~30분 미만	39,440	5,916	40,760	6,114
30분~60분 미만	49,460	7,419	51,110	7,667
60분 이상	59,500	8,925	61,490	9,224

● **중증(1·2등급) 재가 수급자 8시간 방문요양 강화**

- 8시간 방문요양 이용 가능 횟수를 월 6일에서 8일로 상향조정
- * 3·4등급은 기존 4회로 유지('24년 12월 말 최종고시 확정 내용을 봐야 함)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도입**

- 중증 재가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한도액 외에도 단기보호 10일 또는 종일방문요양(12시간)을 연간 20회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도입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

- 요양보호사가 노인요양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95,000원(2년간 1회) 지원
- * 근거 : 2024년 1월 1일 시행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11조의2

구 분	내 용
대 상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교 육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방 법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교육
내 용	가. 직업윤리 및 기본 소양에 관한 사항 나.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에 관한 사항 다. 기본 요양보호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라. 특수 상황별 요양보호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교육

● **수가 가·감산 제도 조정**

- 그간 기관 내 여러 직종 중 한 직종이라도 인력배치 기준을 위반하면 수가 감산뿐 아니라 다른 직종을 추가 배치해서 받은 수가 가산액까지 모두 환수하였으나, 위반 사항에 대한 감산만 적용